

개정 전	개정 후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</u></p> <p><u>⑤ 법 제75조의5제7항 전단에서</u> <u>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”이</u> <u>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 <u>하는 부동산을 말한다.</u></p> <p><u>1.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</u> <u>동주택</u></p> <p><u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</u> <u>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</u> <u>서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</u> <u>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</u> <u>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</u> <u>구주택(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</u> <u>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)</u></p> <p><u>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</u> <u>호라목1)에 따른 일반기숙사</u></p> <p><u>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</u> <u>따른 공동주택, 다가구주택 또는</u> <u>일반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해 취</u> <u>득하는 토지</u></p>

■ 지특법 시행령 부칙

제4조(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